#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경희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는 전문학술에 관한 심오한 이론과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하며 전인교육을 통한 고매한 민주적 품격도야를 기함으로써 문화복지사회 건설에 역군이 될 수 있는 유능한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1989.02.14.개정)

## 제2조(대학,대학원 등)

본 대학교에 문과대학, 정경대학, 경영대학, 호텔관광대학, 이과대학, 생활과학대학,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간호과학대학, 음악대학, 미술대학, 무용학부, 자율전공학부, 공과대학, 전자정보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응용과학대학, 생명과학대학, 국제대학, 외국어대학, 예술·디자인대학, 체육대학, 후마니타스칼리지, 동서의과학과, 일반대학원으로 대학원, 전문대학원으로 동서의학대학원, 국제대학원, 체육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으로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공공대학원, 평화복지대학원, 테크노경영대학원,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법무대학원, 관광대학원,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 간호대학원을 둔다. (2010.03.01.개정)(2011.03.01.개정)(2012.03.01.개정)(2014.03.01.개정)(2017.09.01.개정)(2021.03.01.개정)(2021.09.01.개정)(2022.03.01.개정)

## 제3조(편제 및 정원)

① 각 대학, 학부, 학과 및 전공 편성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별표1]과 같다.

② 각 대학 및 학부에는 제1항의 학과 및 전공 편성 외에 소정 이상의 인원이 별도의 전공프로그램 이수를 원할 경우 총장의 결재를 얻어 해당 전공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해당 프로그램 교과목을 이수한 자에게는 해당 전공 프로그램 전공 명의로 학위증에 부기하되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023.03.01.개정)

③ 제1항의 학과 및 전공 외에 2개 이상의 학과가 융합하여 운영하는 융합전공 및 학생설계전공을 둘 수 있다. (2019.03.01.개정)

④ 제1항의 학과 및 전공 외에 국내·외 대학 간 공유대학 형식으로 교과목을 융합하여 운영하는 공유(융합)전공을 설치할 수 있다. (2022.03.01.신설)

# 제2장 대학원

## 제4조(대학원 학칙)

대학원, 동서의학대학원, 국제대학원, 체육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공공대학원, 평화복지대학원, 테크노경영대학원,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법무대학원, 관광대학원,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 간호대학원의 학칙은 별도로 정한다. (2010.03.01. 개정)(2011.03.01.개정)(2014.03.01.개정)(2021.03.01.개정)(2021.09.01.개정)

# 제3장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기관 등

## 제5조(부속기관 및 부설연구기관)

① 본 대학교에 다음 각 호의 부속기관을 둔다. (2009.03.01.개정) (2012.09.01.개정)(2014.03.01.개정)(2017.03.01.개정)(2018.03.01.개정)(2019.01.04.개정)(2020.03.01.개정)(2021.09.01.개정)(2023.03.01.개정)

1. 경희의료원

2. 강동경희대학교병원

3. 중앙도서관

4. 중앙박물관

5. 자연사박물관

6. 국제교육원

7. 신문방송국

8. 글로벌미래교육원

9. 평생교육원

10. 언어교육원

11. 출판문화원

12. 건강센터

13. 생활관

14. 체육부, 체육시설운영단

15. 천문대

16. 예비군연대본부

17. 산학협력단

18. 교수학습개발원

19. 혜정박물관

20. 인권센터

21. 미래문명원

22. 공학교육혁신센터

23. 원자로센터

24. 의학계열 실습지원센터

25. 경희의과학연구원

26. 경희기록관

27. 한국어센터

② 본 대학교에는 필요에 따라 부설연구기관을 둔다. (1995.03.01.개정)

③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기관의 조직, 직무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1995.03.01.신설)

## 제5조의2(기타기관)

① 본 대학교에 다음 각 호의 기타기관을 둔다. (2016.03.01.신설)(2017.03.01.개정)

1. 학생군사교육단

② 기타기관의 조직, 직무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4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 제6조(수업연한과 재학연한)

① 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다만, 공과대학 건축학과는 5년,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은 예과 2년, 전공교육 4년으로 하고, 약학대학 약학과는 6년으로 한다. (2010.03.01. 개정)(2020.03.01.개정)(2022.03.01.개정)

② 5년제 학·석사연계과정을 허가 받은 자의 학부 수업연한은 3.5년으로 한다. (2005.07.01.개정)

③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2004.03.01.개정)

## 제7조(수업년한의 단축)

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수업년한을 2학기까지 단축하여 조기졸업 할 수 있다. (2004.03.01.개정)

② 제1항의 조기졸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004.03.01.개정)

# 제5장 학년도, 학기, 수업일, 휴업일

## 제8조(학년도, 학기)

① 학년도는 3월 1일로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사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기개시일과 개강일을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004.03.01.개정)(2021.03.01.개정)

② 학년도는 다음과 같이 학기로 나눈다. 다만, 필요에 따라 학부(과),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2학기를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2011.03.01.개정)(2019.03.01.개정)(2021.03.01.개정)

1.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2학기 : 9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③ 방학 중 필요에 따라 계절수업을 위한 계절학기를 둘 수 있다. (2011.03.01.개정)(2019.03.01.개정)

④ 한 학기 동안 자신이 직접 설계한 활동을 수행하여 학점을 인정받는 프로젝트 학기제인 사회혁신학기제를 학기 중에 운영할 수 있으며, 사회혁신학기제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2024.03.01.개정)

## 제9조(수업)

① 수업은 주간(편제상 야간학과는 야간)에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야간수업, 계절수업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하 ‘원격수업'이라 함)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2004.03.01.개정)(2019.03.01.개정)

② 제1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1997.03.01.개정)

## 제10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2007.03.01.개정)(2018.03.01.개정)(2020.03.01.개정)

②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 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을 경우에는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2008.03.01.개정)(2018.03.01.개정)

③ 교과별 수업일수는 제1항에 불구하고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 시 제38조의 학점 당 필요한 이수시간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수업일수 이내로도 운영할 수 있다. (2018.03.01.신설)(2020.03.01.개정)

## 제11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04.03.01.개정)(2016.03.01.개정)(2019.01.04.개정)

1. 여름방학기간

2. 겨울방학기간

3. 개교기념일(5월 18일)

4. 토요일, 일요일

5.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② 총장은 제1항의 방학기간을 정하며, 필요한 경우 입학시험, 비상재해, 그 밖에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 및 휴업기간을 정할 수 있다. (2004.03.01.개정)(2011.03.01.개정)(2019.03.01.개정)(2021.03.01.개정)

③ 휴업일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2004.03.01.개정)(2011.03.01.개정)(2018.09.01.개정)

# 제6장 입학(편입학, 재입학 포함)

## 제12조(입학시기)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매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2004.03.01.개정)

## 제13조(입학자격)

본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본 대학교의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이어야 한다. (2007.03.01.개정)

## 제14조(입학지원서류)

①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정의 입학원서를 제출하고, 수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000.03.01.개정)

1. 졸업(수료)증명서 또는 동 예정증명서, 기타 자격을 증명할 만한 서류

2. 성적증명서(내신 성적 포함)

3. 기타 필요한 서류

② 재입학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1999.03.01.개정)

③ 이미 제출한 서류 또는 수험료는 입학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999.03.01.개정)

## 제15조(학생선발방법)

① 본 대학교의 학생선발은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대학별고사의 성적 등을 활용하여 할 수 있다. (1997.03.01.개정)

② 제1항의 대학별고사란 본 대학교에서 실시하는 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또는 적성·인성검사 또는 서류(실적 등) 평가를 말한다. (2005.07.01.개정)

## 제16조(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등)

① 대학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와 체육특기자선발·연구위원회를 둔다. (2005.07.01.개정)

②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는 캠퍼스별로 설치하고 체육특기자선발·연구위원회는 국제캠퍼스에 설치하며 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2007.09.01.개정)

## 제17조(편입학)

① 편입학은 여석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004.03.01.개정)

② 간호과학대학의 3학년 야간 편입생 정원은 입학정원 외로 허가할 수 있다. (2004.03.01.개정)

③ 본 대학교 제 3학년에 편입할 수 있는 자는 각기 당해 학년에 진급할 자격이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거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2007.03.01.개정)

④ 학사학위를 가진 자는 제3학년, 의학계열(한의학과)은 본과 1학년에 편입학 할 수 있다. (2007.03.01.개정)

⑤ 제4학년에는 편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⑥ 학사편입학은 해당학과 입학정원의 10% 이내, 제 3학년 총 입학정원의 2% 이내를 모두 충족함에 한하여 입학정원외로 허가할 수 있다. (1995.12.14.개정)(2019.03.01.개정)

⑦ 편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18조(재입학)

① 제적된 자는 해당 대학(학부, 학과)의 심사를 거쳐 대학장의 추천을 받아 여석 범위 내에서 재입학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004.03.01.개정)

② 재입학은 제적 전에 재적하였던 학과의 동일학년에 한하며, 성적학기가 1개 이상 있는 자에 한해 2회까지만 허가한다. 다만, 성적경고 및 유급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1회에 한한다. (2004.07.01.개정)(2020.03.01.개정)(2021.03.01.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징계 제적자의 재입학은 징계 제적의 사유 등에 따라 총장이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4.03.01.개정)

④ 재입학을 허가하고자 하는 학과 또는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에는 해당 모집단위의 교과과정과 유사한 교과과정을 운영하는 학과 또는 모집단위로 재입학을 하게 할 수 있다. (2020.03.01.신설)

## 제19조(입학의 허가)

① 입학의 허가는 소속 대학장의 제의에 의하여 총장이 행한다. (2003.03.01.개정)

②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기일 내에 입학금 및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학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19조의2(입학허가의 취소)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제19조 제2항의 절차를 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 및 졸업 후에라도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1995.03.01.개정)(2017.03.01.개정)

1. 매 입학 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지원방법, 등록방법 위반 등이 입학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3. 입학 후 서류검증 등을 통해 주요사항 누락 등 부정한 입학 내용이 확인된 경우

4. 대리시험과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과정에 참여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③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 제20조(보증인)

삭제 (2019.03.01.개정)

# 제7장 등록과 수강신청

## 제21조(등록)

학생은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1995.03.01.개정)

## 제22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매학기 소정기간에 수강할 교과목을 신청하여야 한다. (2004.03.01.개정)(2019.03.01.개정)

② 삭제 (2004.03.01.개정)(2021.03.01.개정)

# 제8장 전과(부)

## 제23조(전과(부)

) ① 전과(부)는 입학정원의 20%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약학과 전공과정으로 편입학 전과 전입인원은 그 정원을 별도로 둔다. (2004.03.01.개정)(2015.03.01.개정)(2018.03.01.개정)

② 학생의 소속 학부 또는 학과의 변경(이하 ‘전과(부)'라 한다)은 제3학기 초부터 제5학기 초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2004.03.01.개정)

③ 전과(부)는 무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고사를 시행할 수 있다. (2004.03.01.개정)

④ 전과(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004.03.01.개정)

## 제24조(전과(부)

의 자격) ① 전과(부)는 전과(부)하고자 하는 학기의 전학기까지 이수하여야할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재학생에 한하여 1회만 허가할 수 있다. (2004.03.01. 개정)(2020.03.01. 개정)

② 전과(부)를 제한한 전형으로 입학한 자, 편입학한 자 및 재입학한 자는 전과(부)할 수 없다. (2007.03.01.개정)

## 제25조(전과의 허가)

전과(부)는 대학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허가한다. (2004.03.01.개정)

## 제26조(이수과목 및 학점)

삭제

## 제27조(이수연한)

삭제 (1996.09.06.개정)

# 제9장 휴학·복학·퇴학·제적

## 제1절 휴학 및 복학

제28조(휴학)

①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총장은 소정기간 외라도 질병, 병역, 육아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학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휴학을 명할 수 있다. (2004.03.01.개정)(2015.03.01.개정)

② 제1항에 의거한 휴학은 원칙적으로 등록한 학생에 한하여 가능하나 등록기간 중에는 예외적으로 미등록 상태에서 휴학할 수 있다. (2000.03.01.개정)(2022.03.01.개정)

③ 휴학기간은 1회 신청시에 두 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통산하여 3년(6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편입학생의 휴학기간은 통산하여 1.5년(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약학과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2007.05.01.개정)(2020.03.01.개정)(2022.03.01.개정)

④ 제3항의 휴학기간에 병역, 유급, 임신·출산·육아, 창업을 사유로 하는 휴학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동 사유로 인한 휴학의 기간은 병역은 의무복무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학기의 다음학기 말일까지, 유급은 유급기간 이내, 임신·출산·육아 및 창업은 각 2년 이내로 한다. (2015.03.01.개정)(2020.03.01.개정)

⑤ 장애학생은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11.03.01.개정)

⑥ 휴학자는 휴학 중 학적을 보유한다. (2004.03.01.개정)

⑦ 제3항에서 정한 휴학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총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2012.03.01.개정)(2019.03.01.개정)

제29조(휴학기간 인정)

삭제 (1989.02.14.개정)

제30조(복학)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1989.02.14.개정)(2021.03.01.개정)

제30조의2(이중학적 금지)

본교 재적생은 타대학 이중학적 및 본 대학 학위과정간 이중학적을 가질 수 없다. (2020.03.01.신설)(2023.03.01.개정)

## 제2절 퇴학 및 제적

제31조(자퇴)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자퇴를 하고자 하는 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00.03.01.개정)(2011.03.01.개정)(2020.03.01.개정)

제32조(중도수료)

삭제 (1989.02.14.개정)

제33조(제적)

총장은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제적할 수 있다. (2005.07.01.개정)(2016.03.01.개정)(2019.03.01.개정)(2020.03.01.개정)

1. 휴학기간 종료 후 3주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011.03.01.개정)

2.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

3. 질병, 기타 사유로 학업의 성업에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4. 성적경고를 계속하여 3회 이상 받은 자

5. 유급에 의한 제적사유에 해당하는 자

6. 징계에 의한 제적사유에 해당하는 자

7. 본인 사망

# 제10장 교과의 이수

## 제1절 교육과정

제34조(교육과정)

① 학부과정의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2004.03.01.개정)(2011.03.01.개정)

② 외부기관에서 운영하는 인증제를 운영하는 학과는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015.03.01.개정)

③ 교육과정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교육과정운영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004.03.01.개정)

제34조의2(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2019.03.01.신설)(2021.03.01.개정)

제34조의3(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해당 외국 또는 해당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국내대학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2019.03.01.신설)(2021.03.01.개정)

제34조의4(국내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국내대학 간 협약을 통해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022.03.01.신설)

제35조(교과목의 분류)

① 교과목은 전공과목, 교양과목 및 일반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2020.03.01. 개정)

② 일반선택과목은 일반행정부서에서 개설하는 과목으로 취·창업스쿨 과목, 군사학 과목 등이 있다.(2020.03.01. 신설)

③ 전공과목과 교양과목 중 필수와 선택구분은 교육과정에 따른다. 다만, 필요에 따라 교직과목을 둘 수 있다.(2004.03.01.개정)(2020.03.01.개정)

제36조(전공의 이수)

① 학생은 학부(과)에서 제공하는 전공을 단일전공 또는 다전공 과정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소속 학부(과)에 설치된 전공 또는 융합전공 중 하나는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2012.03.01. 개정)(2019.03.01.개정)(2021.03.01.개정)

② 재학 중 특정한 학과(전공)별 교육과정 시행세칙에서 정한 부전공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부전공을 인정하고 학위증에 부전공을 표시한다. (1999.03.01 개정)(2011.03.01.개정)(2020.03.01.개정)

③ 융합전공, 연계전공 및 학생설계전공은 다전공 과정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이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2012.03.01.개정)(2019.03.01.개정)

④ 공학교육인증과정을 운영하는 학과(전공) 학생은 공학인증프로그램 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입생 및 중도 포기자를 위해 비인증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할 수 있다. (2009.03.01.개정)(2011.03.01.개정)

⑤ 부전공, 다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및 공학교육인증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007.03.01.개정)(2019.03.01.개정)

⑥ 전공 내에 분야별로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특화된 교육과정을 ‘트랙'이라 칭한다. 트랙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012.03.01.개정)(2020.03.01.개정)(2023.03.01.개정)

⑦ 산업체 및 사회에서 요구되는 특화된 교육과정인 ‘마이크로디그리(Micro Degree)'를 운영할 수 있으며 마이크로디그리(Micro Degree)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022.03.01.신설)(2023.03.01.개정)

제37조(학ㆍ석사연계과정)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과정을 상호 연계하는 5년제 학·석사연계과정을 운영하며, 학·석사연계과정 시행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005.07.01.신설)

제38조(교과 이수단위)

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이론 및 설계는 한 학기당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실험,실습(임상포함),실기 등은 한 학기당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되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010.03.01.개정)(2018.03.01.개정)(2019.03.01.개정)

## 제2절 수업

제39조(수업의 관장)

전공과목 수업은 해당 대학에서 관장하고, 교양과목 수업에 대하여는 후마니타스칼리지에서 운영하되 일반선택과목은 해당 부서에서 운영한다. (2004.03.01.개정)(2014.03.01.개정)(2020.03.01.개정)

제40조(수업시간표)

매 학기의 수업시간표는 수업 개시일 전에 시간표 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고 각 학과(전공)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정한다. (2003.03.01.개정)(2011.03.01.개정)

제41조(수업제한)

삭제(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교육부령 제7조 참조) (1995.03.01.개정)

## 제3절 시험과 성적

제42조(시험)

① 교과목별로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을 실시하며, 필요시 수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2004.03.01.개정)(2017.09.01.개정)

② 시험방법은 필기로 한다. 다만 과목의 성격에 따라 구술, 논문 또는 기타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2017.09.01.신설)

③ 삭제 (2019.03.01.개정)

④ 삭제 (2019.03.01.개정)

<3항, 4항을 46조로 이동>

제43조(종합시험)

삭제 (1989.02.14.개정)

제44조(추가시험)

① 병역,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시험 개시 전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담당 교강사 및 강좌를 개설한 대학장(무용학부 및 자율전공학부는 학부장, 이하 같다)의 승인을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009.03.01.개정)(2017.03.01.개정)(2021.03.01.개정) (2024.03.01.개정)

② 불가항력으로 사전에 제1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자는 사유 종료 직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5조(특별시험)

① 총장이 지정하는 교양과목에 대하여는 수강을 하지 않고 특별시험에 의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1999.03.01.개정)

② 학점 취득 특별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004.03.01.개정).

제46조(성적)

① 학업성적은 시험성적, 과제평가, 출석상황, 학습태도 등을 종합하여 등급으로 평가한다. (2010.03.01.개정)

② 매 학기 해당 교과목 수업일수의 2분의 1 이상을 실제 출석하여야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 (2017.09.01.신설)(2019.03.01.개정)

③ 매 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교과목의 성적은 F를 부여한다. 단, 체육특기자(교직과정 이수자 제외)는 예외로 한다. (2017.09.01.신설)(2019.03.01.개정)(2022.03.01.개정)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교과목에 대하여는 실점과 평점을 산출하지 아니하고 급제와 낙제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제는 P등급, 낙제는 N등급으로 표시하되, 교과목에 따라 급제만을 표기할 수 있으며, 성적 평점평균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2009.03.01.개정)(2011.03.01.개정)(2016.03.01.개정)

⑤ 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2010.03.01.개정)

⑥ 성적의 D- 등급 이상과 P를 급제로 하고 F등급과 N등급을 낙제로 한다. (2004.03.01.개정)

| **등급** | **평점** |
| --- | --- |
| A + | 4.3 |
| A 0 | 4.0 |
| A - | 3.7 |
| B + | 3.3 |
| B 0 | 3.0 |
| B - | 2.7 |
| C + | 2.3 |
| C 0 | 2.0 |
| C - | 1.7 |
| D + | 1.3 |
| D O | 1.0 |
| D - | 0.7 |
| F | 0 |

제47조(성적경고)

① 학업성적이 불량한 자에게는 성적경고를 할 수 있다. (2004.03.01.개정)

② 재학 중 연속 3회의 성적경고를 받은 자는 제적된다. 다만, 졸업대상자 중 해당 학기 성적취득으로 졸업 또는 수료가 가능한 자는 제외한다. (2004.03.01.개정)(2011.03.01.개정)

③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교육프로그램을 의무수강하는 학기에 받은 성적경고는 제2항의 성적 경고제적에 필요한 연속학기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2017.03.01.신설)

④ 성적경고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2004.03.01.개정)

제48조(유급)

의ㆍ약학계열 각 대학이 정한 소정의 학년진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은 유급된다. (2012.03.01.개정)

## 제4절 학점의 인정

제49조(학점인정)

① 급제로 인정된 과목에 대하여는 소정학점을 인정한다.

② 삭제 (2019.03.01.개정)

③ 국내외의 다른 학교 또는 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본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편입학생은 편입 전 취득한 학점인정 외에 편입 후 본교에서 취득해야 하는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국내외의 다른 학교 또는 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2009.03.01.개정)(2018.03.01.개정)(2020.03.01.개정)

④ 별도로 지정된 국내외 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2009.03.01.개정)

⑤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과정으로서 본교와 외국대학의 학위를 복수로 수여하거나 외국대학과 공동명의로 수여하는 학위 과정을 이수할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3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2018.03.01.신설)(2019.03.01.개정)

⑥ 외국대학의 국내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 전부를 인정할 수 있다. (2019.03.01.신설)

⑦ 삭제 (2020.03.01.개정)

제50조(학점의 취소)

인정한 학점이라도 과오 또는 부정행위로 인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취소한다. (1989.02.14.개정)

제51조(학기 당 수강학점)

① 학기 당 최소 수강학점은 9학점으로 한다. 다만 의·약학계열 학과의 최소 수강학점은 18학점으로 한다. (2019.03.01.개정)

② 학기 당 최대 수강학점은 18학점으로 한다(건축학과 포함). 다만, 졸업학점이 120학점인 대학은 1학기 18학점, 2학기 15학점으로 하고, 졸업학점이 140학점 이상인 대학은 1학기 21학점, 2학기 18학점으로 하고, 의학계열 학과 및 약학대학 약학과(6년제)는 학기당 23학점으로 하고, 약학계열 학과[약학과(6년제) 제외]는 학기당 21학점으로 하고,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 협약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총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011.03.01.개정)(2012.09.01.개정)(2015.03.01.개정)(2019.03.01.개정)(2021.03.01.개정)(2024.03.01.개정)

③ 직전 학기에 15학점 이상을 수강하고, 평점평균이 3.90이상이며 F등급이 없는 자는 다음 학기에 3학점까지 초과하여 수강할 수 있다. 다만, 동 학점은 학년 당 수강허용학점 수에 포함되지 않고, 차기 학기로 이월되지 않으며, 학점당 등록자 및 수업연한을 초과한 자, 직전학기 수강신청학점 철회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2010.03.01.개정)(2011.03.01.개정)(2014.03.01.개정)(2019.03.01.개정)

④ 학ㆍ석사연계 과정생은 학기당 3학점까지 초과하여 수강할 수 있다. (2005.07.01.개정)

⑤ 수강신청 결과 학기 당 최대 수강허용학점을 채우지 못한 때에는 최대 3학점까지 다음 학기의 수강허용학점으로 이월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011.03.01.신설)(2019.03.01.개정)(2022.03.01.개정)

⑥ 국내·외 대학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과정생, 졸업예정자, 학점당 등록자는 학기당 최소수강학점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9.03.01.개정)(2011.03.01.개정)(2019.03.01.개정)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대학 연수학점 등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최대수강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다. (2009.03.01.개정)(2011.03.01.개정)(2015.03.01.개정)(2019.03.01.개정)

제52조(선수과목의 이수)

삭제 (2004.03.01.)

제53조(편입생의 학점인정)

편입생의 전적대학 취득학점 중 본 대학교에서 인정하는 학점 및 이수해야 할 학점 등의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54조(전과(부)

생의 학점인정) ① 전과(부)한 자는 해당 학과(전공)의 과정과 공통되는 범위 내에서 종전의 성적과 학점을 인정받으며 소정의 잔여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2004.03.01.개정)

② 전과 이전 캠퍼스에서 취득한 교양학점은 전과 후 캠퍼스의 동일한 영역의 교양학점으로 인정한다. (2011.03.01.개정)(2021.03.01.개정)

## 제5절 졸업

제55조(졸업학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20학점 이상으로 하되,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각 대학(학과)별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각 대학(학과)별 졸업필요학점은 [별표 3]과 같다. (2010.03.10.개정)(2011.03.01.개정)(2012.09.01.개정)(2015.03.01.개정)(2018.03.01.개정)(2019.01.04.개정)

제56조(수료학점)

1. 각 학년의 수료를 인정함에 필요한 학점은 아래와 같다. 다만, 수료학점 기준 산출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2004.03.01.개정)(2011.03.01.개정)

| **학년** | **전 학과/전공 (단, 의약학계열, 건축학과 제외)** | **의약학계열** | **건축학과** |
| --- | --- | --- | --- |
| 1학년 | 졸업학점의 1/4 이상 | 별도로 정함 | 33 |
| 2학년 | 졸업학점의 2/4 이상 | 별도로 정함 | 66 |
| 3학년 | 졸업학점의 3/4 이상 | 별도로 정함 | 99 |
| 4학년 | 졸업학점의 4/4 이상 | 별도로 정함 | 132 |
| 5학년 | - | - | 165 |

② 수료가 인정된 자에게는 학년별 수료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최종학년 수료증명서는 졸업사정 결과 수료자에게만 발급한다. (2011.03.01.신설)

제57조(졸업논문)

① 졸업예정자는 졸업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과)의 특성에 따라 졸업시험, 졸업작품, 실험실습보고, 실기발표 등 다른 방법으로 졸업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 (2004.03.01.개정)

② 졸업논문은 해당 전공별로 정하는 소정의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000.03.01.개정)

③ 졸업논문의 통과 기준은 학부(과)별로 정하여 운영한다. (2003.03.01.개정)(2011.03.01.개정)(2021.03.01.개정)

④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도 논문심사에 불합격된 자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하지 않는다. (1989.02.14.개정)(2021.03.01.개정)

⑤ 학·석사연계과정생의 학부과정 졸업논문은 면제한다.

제58조(수료 및 졸업인정)

①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게 졸업을 인정하고 [별지 제1호](공학인증 관련 전공자는 [별지 제2호])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별표2]의 학위명을 기재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하되, 졸업인정에 필요한 요건은 별도로 정한다. (2009.03.01.개정)(2011.03.01.개정)(2019.03.01.개정)(2023.03.01.개정)

②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외에도, 학장은 졸업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과정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2011.03.01.신설)

③ 삭제(2022.03.01)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학사학위 취득 요건 중 졸업능력인증제 요건 또는 졸업논문(또는 대체 시험)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최종학년 수료로 한다. (2011.03.01.신설)

⑤ 삭제 (2020.03.01.개정)

⑥ 국내·외 대학과의 복수학위 교류협정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에게는 복수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006.09.01.신설)

⑦ 공학교육인증과정 프로그램 이수자는 졸업인정 요건 및 공학교육인증 이수요건을 충족한 경우 학위를 수여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009.03.01.개정)

⑧ 제36조 제6항의 트랙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그 명칭을 졸업증명서에 기재할 수 있으며 트랙 교육과정의 명칭은 학과별 교육과정에 따른다. (2012.03.01.개정)(2020.03.01.개정)

⑨ 제36조 제7항의 마이크로디그리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그 명칭을 성적증명서에 기재할 수 있으며 해당 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한다. (2022.03.01.신설)

제59조(명예졸업증서수여)

① 문화, 예술 및 사회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여 학교의 명예를 빛낸 자에게는 명예졸업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2004.03.01.개정)

② 명예졸업증서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60조(졸업의 취소)

졸업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졸업을 취소한다. (2007.03.01.개정)(2011.03.01.개정)

1. 입학 전형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 (2011.03.01.신설)

2. 제50조(학점의 취소)에 해당하는 사유로 학점이 취소되어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 (2011.03.01.개정)

# 제11장 학생활동

## 제61조(학생의 의무)

학생은 따로 정하는 교칙을 준수하며 성심성의로 학업에 열중하고 덕성과 교양을 높여 장래 지도자가 될 자질을 닦아야 한다. (1989.02.14.개정)

## 제62조(결석계 등)

삭제 (2000.03.01.신설)(2017.03.01.개정)

## 제63조(표창)

① 학장은 품행이 바르고 학력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는 학생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명의로 표창할 수 있다. (2003.03.01.개정)

② 학생의 표창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2000.03.01.신설)

## 제64조(학생회의 설치)

① 학생의 자율적인 활동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인격을 함양하고 참된 대학문화의 창달과 자유롭고 창조적인 학술연구 및 그 응용방법을 연마하기 위하여 경희대학교 학생회를 둔다. (1989.02.14.개정)

② 본 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은 자동적으로 경희대학교 학생회의 회원으로 된다.

③ 학생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학생 자치활동의 육성과 발전을 돕기 위하여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1989.02.14.개정)

## 제65조(학생회의 단체)

삭제 (1989.02.14.개정)

## 제66조(학생회비)

학생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67조(활동의 범위)

① 학생은 수업 및 연구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자치활동을 할 수 있다.

② 학생의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1989.02.14.개정)

## 제68조(간행물)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의 발행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69조(학생지도)

삭제 (1989.02.14.개정)

## 제70조(징계)

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학생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2000.03.01.개정)

1. 학칙 등 본교의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폭력 행위, 불법적인 집단 행위, 시험 중 부정행위, 학교 시설물 파괴, 절취 등 학생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자

2. 학교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거나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②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한다. (1999.03.01.개정)

③ 학생의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2000.03.01.개정)

## 제71조(교수회 심의의 생략)

삭제 (1989.02.14.개정)

제12장 직제

## 제72조(직제)

본 대학교의 직제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 제13장 교수회

## 제73조(교수회)

①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회를 둔다. (1995.03.01.개정)

② 교수회는 전체교수회·단과대학 교수회로 구분한다. (2003.03.01.개정)

## 제74조(교수회의 조직 등)

① 교수회는 본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1995.03.01.개정)

② 전체교수회는 총장이, 단과대학 교수회는 단과대학장이 소집하고 각각 그 의장이 된다. (2003.03.01.개정)

③ 총장은 단과대학 교수회에 참석할 수 있다. (2003.03.01.개정)

## 제75조(교수회의 기능)

교수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하며, 총장 또는 학장의 자문에 응한다. (2003.03.01.개정)

1. 교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학사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지도 및 시험에 관한 사항

4. 총장 또는 학장이 부의 하는 사항

5.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 제76조(교수회의 의결방법)

교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20.03.01.개정)

# 제14장 교무위원회

## 제77조(교무위원회의 설치)

본 대학교에는 교무위원회를 둔다. (1995.03.01.개정)

## 제78조(교무위원회의 구성)

① 교무위원회는 총장, 각 부총장, 경희의료원장, 강동경희대학교병원장, 기획조정처장, 미래혁신원장, 각 대학원장, 각 대학장, 각 처장, 미래혁신단장, 커뮤니케이션센터장, 중앙도서관장, 국제교육원장, 글로벌미래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신문방송국장, 산학협력단장, 총장실장, 경희의과학연구원장, 재정운영본부장으로 구성한다. (2010.03.01.개정)(2011.03.01.개정)(2012.03.01.개정)(2012.09.01.개정)(2017.03.01.개정)(2017.09.01.개정)(2018.03.01.개정)(2019.03.01.개정)(2021.03.01.개정)(2023.03.01.개정)

②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항 이외의 자를 참석케 하거나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1995.03.01.신설)

③ 교무위원 중 정보처장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및 동 시행령에 따른 정보화책임관의 임무를 수행한다. 정보화책임관의 직무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007.03.01.개정)(2017.03.01.개정)(2019.01.04.개정)

## 제79조(교무위원회의 회의)

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008.03.01.개정)

## 제80조(교무위원회의 기능)

① 교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008.03.01.개정)(2021.03.01.개정)

1. 대학, 학부(과), 부속기관, 부설연구기관의 설립·폐지에 관한 사항

2. 제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3.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4.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 제80조의2(교무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교무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23.03.01.개정)

# 제15장 등록금

## 제81조(등록금)

학생은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수업료 및 기타 납부금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82조(실습비)

삭제

## 제83조(등록금의 납부방법)

① 등록금은 공고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등록금 분할납부신청을 하는 경우, 총장이 그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허용할 수 있다.(2020.03.01.개정)(2020.03.01.개정)

## 제84조(등록금의 공고)

등록금의 금액 및 납부기일은 매 학기 개시 전에 공고한다.

## 제85조(복학자의 등록금)

복학이 허가된 자는 그 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86조(등록금의 감액, 면제제한)

등록금은 결석, 징계, 수강신청 미이행 또는 학점미취득으로 인하여 감면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2000.03.01.개정)(2019.03.01.개정)

## 제87조(등록금의 반환)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관계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 또는 반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련 규정으로 정한다. (2009.03.01.개정)(2012.03.01.개정)(2012.09.01.개정)

# 제16장 위탁학생, 외국인 및 장애학생

## 제88조(위탁학생)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은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2008.03.01.개정)

## 제89조(위탁학생의 제명)

위탁학생이 재학 중 교육부령에서 정하는 위탁학생의 신분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제적된다. (2008.03.01.개정)

## 제90조(외국인의 편입)

외국인으로서 본 대학교에의 입학(편입학, 재입학 포함)자격이 인정되는 자는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2000.03.01.개정)

## 제90조의2(장애학생)

특수교육대상자로서 본 대학교에의 입학 자격이 인정되는 자는 정원외로 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2010.03.01.신설)

## 제90조의3(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장애로 인하여 입학과 수학에 차별이나 불이익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을 한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2010.03.01.신설)

## 제91조(학칙의 적용)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학칙은 위탁학생과 외국인 및 장애학생에게도 적용한다. (2010.03.01.개정)

# 제17장 장학금

## 제92조(장학금)

① 품행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2012.03.01 개정)

② 제1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2012.03.01 개정)

# 제18장 공개강좌 제도

## 제93조(공개강좌 등의 개설)

① 본 대학교에 직무, 교양 또는 연구상 필요한 학술의 습득을 위하여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일반 사회인들에게 열린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점은행제를 둘 수 있다. (1999.03.01.개정)(2020.03.01.개정)

## 제94조(공개강좌의 과목 등)

공개강좌의 과목, 제목, 기간, 수업자격 및 정원, 장소, 기타에 관한 사항은 개강시마다 총장이 이를 정한다.

## 제95조(공개강좌의 허가 등)

공개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여석이 있는 한 개강 중 수시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2000.03.01.개정)

## 제96조(공개강좌의 수강허가 취소)

공개강좌 수강자로서 규율을 문란케 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수강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 제97조(시간제등록생 제도의 운영)

삭제 (2020.03.01.개정)

# 제19장 예능교실

## 제98조(예능교실 설치)

삭제 (2004.03.01.개정)

## 제99조(예능교실 운영)

삭제 (2004.03.01.개정)

# 제20장 학점은행제

## 제100조(학위수여요건 및 학위의 종류)

① 본 대학교 글로벌미래교육원 또는 평생교육원에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가 본 대학교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002.08.01.신설)(2018.03.01.개정)(2019.03.01.개정)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학위요건에 따라 교양 30학점 이상, 전공 60학점 이상(전공필수 포함), 총 140학점 이상 인정받은 자

3. 본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이 84학점 이상인 자

4. 학사학위 소지자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학위수여 요건)에 따라 다른 전공 분야의 학위를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전공분야에서 전공 48학점 이상을 본 대학교에서 취득한 자. 다만, 한국어학 전공은 전공 60학점 이상을 본 대학교에서 취득한 자에 한함 (2010.03.01.신설)

② 본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에는 정규 교육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본교 글로벌미래교육원 및 평생교육원에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을 이수한 학점을 포함한다. (2019.03.01.신설)(2020.03.01.개정)

③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2019.03.01.신설)

④ 학위수여 가능한 학위의 종류 및 전공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9.03.01.신설)

1. 본교 정규학과 교육과정 중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전공에 한한다.

2. 전공명이 유사할 경우 유사전공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유사전공심의위원회의 운영은 별도 내용에 따른다

⑤ 학점은행제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종별표는 [별표4]에 따른다.

## 제101조(학위수여 절차)

① 제100조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가 본 대학교 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 (2019.03.01.개정)

1. 대학의 장의 학위 수여를 받고자 하는 학습자는 대학의 장 학위신청서 및 관련 증명 서류를 대학이 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학위수여예정자 명단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제출하고 학위수여여부 확인을 하여야 한다.

3.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번호 부여한 후 그 명단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통보하며 학위번 호는 ‘대학-학점-연도-일련번호' 형식으로 한다.

4. 학위수여된 자에게 학위증,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를 발급 하여야 하며 해당 증명서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학칙 제100조 및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학위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5. 증명서 양식은 별지 3,5,6호에 따른다.

## 제102조(학습과정)

① 학점은행제 학습과정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내지 제9조 사항을 포함하여 운영규정을 준수한다. (2017.03.01.신설)

② 학점은행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2017.03.01.신설)

# 제21장 산학협력기관

## 제103조(산학협력단)

①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학협력단을 둔다. (2004.01.01.신설)(2019.01.04.개정)

②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004.01.01. 신설)

## 제104조(학교기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기업을 아래와 같이 설치한다. (2008.03.01.개정)(2014.03.01.개정)(2019.01.04.개정)(2021.03.01.개정)(2022.03.01.개정)

A table with black text

Description automatically generated with medium confidence

## 제105조(학교기업의 현장실습 활용)

①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에 대하여 최대 15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학점 인정 상한선은 전공별로 결정한다. 다만, 1개 학기당 인정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한다. (2004.06.23.신설)

② 기타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2004.06.23.신설)

## 제106조(학교기업의 보상금 지급 기준)

① 학교기업운영 및 결산 결과 순이익 발생 시 순이익의 20% 범위 내에서 순이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을 줄 수 있다. (2004.06.23.신설)

② 교직원 1인당 연간 보상금은 순이익의 5%를 넘을 수 없다. (2004.06.23.신설)

③ 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되, 1인당 연간 등록금 총액을 넘을 수 없다. (2004.06.23.신설)

④ 교직원, 학교기업직원 또는 학생이 특허 등 산업재산권을 제공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금은 별도 기준에 의해 지급할 수 있다. (2004.06.23.신설)

⑤ 학칙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2004.06.23.신설)

# 제22장 대학평의원회

## 제107조(대학평의원회의 설치)

① 「학교법인 경희학원 정관」 (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31조의4 내지 제31조의8에 따라 대학 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의원회의 평의원 자격기준, 위원위촉 방법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2008.01.08.개정)

제22장의 2 교수의회

## 제107조의2(교수의회의 설치)

① 본교 전임교원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교수의회를 둘 수 있다. (2008.03.01.개정)

② 교수의회의 구성,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 및 학칙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한다. (2009.03.01.개정)

제23장 보칙

## 제108조(교원의 교수시간)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2008.03.01.개정)(2012.03.01.개정)

## 제109조(개정절차)

① 학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학칙개정 의뢰 시 관련 부서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학칙개정의 필요성, 개정내용, 시행예정일 및 개정에 따른 효과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 (2010.03.01..개정)

② 교무처장은 각 부서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수합·정리하여 검토 후 개정내용에 대해 의뢰 부서장과 협의를 거친 후 기획조정처장에게 심의를 의뢰한다. (2010.03.01.개정)(2012.09.01.개정)(2021.09.01.개정)

③ 기획조정처장은 의뢰된 학칙개정안에 대해 심의 후 그 결과를 교무처장에게 송부한다. (2010.03.01.개정)(2012.09.01.개정)(2021.09.01.개정)

④ 교무처장은 기획조정처장의 심의를 거친 학칙 개정안을 교무위원회의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2010.03.01.개정)(2012.09.01.개정)(2021.09.01.개정)

⑤ 교무처장은 교무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에서 심의된 학칙 개정안을 총장 결재 후 확정하여 시행한다. (2010.03.01.개정)

# [별표1] 2018~2025학년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캠퍼스 서울

| **대학** | **학과(전공)** | **2025** | **2024** | **2023** | **2022** | **2021** | **2020** | **2019** | **2018** |
| --- | --- | --- | --- | --- | --- | --- | --- | --- | --- |
| 문과대학 | 국어 국 문 학과 | 55 | 55 | 55 | 55 | 55 | 55 | 55 | 55 |
|  | 영어 영문 학과 | 42 | 42 | 42 | 42 | 42 | 42 | 42 | 42 |
|  | 응용 영어통 번역 학과 | 41 | 41 | 41 | 41 | 41 | 41 | 41 | 41 |
|  | 사학과 | 40 | 40 | 40 | 40 | 40 | 40 | 40 | 40 |
|  | 철학과 | 37 | 37 | 37 | 37 | 37 | 37 | 37 | 37 |
|  | 소계 | 215 | 215 | 215 | 215 | 215 | 215 | 215 | 215 |
| 사회과학광역 | 정경대학, 경영대학, 호텔관광대학, 생활과 아아 학 대학 전체 모집단위 ( \* 제외 ) ) | 56 | 56 | - | - | - | - | - | - |
| 정경대학 | 정치 외교 학과 | 44 | 44 | 45 | 45 | 45 | 45 | 45 | 45 |
|  | 행 정 학 과 | 67 | 67 | 69 | 69 | 69 | 69 | 69 | 69 |
|  | 사 학 과 | 36 | 36 | 37 | 37 | 37 | 37 | 37 | 37 |
|  | 경 학 과 | 89 | 89 | 92 | 92 | 92 | 92 | 92 | 92 |
|  | 무 역 학 과 | 71 | 71 | 73 | 73 | 73 | 73 | 73 | 73 |
|  | 언론 정보 학과 | - | - | 1 | - | - | 74 | 74 | 74 |
|  | 미 디 학 과 | 72 | 72 | 74 | 74 | 74 | - | - | - |
|  | 국제통상 · 금융투자학과 | - | - | 1 | - | - | 1 | 1 | 1 |
|  | 국제통상 · 금융투자학부\* ( 국제 통상 학 전공 ) (국제금융투자학전공) | 1 | 1 | 1 | 1 | 1 | - | - | - |
|  | 소 계 | 380 | 380 | 391 | 391 | 391 | 391 | 391 | 391 |
| 경영대학 | 경 영 학 과 | 188 | 188 | 221 | 221 | 221 | 221 | 221 | 221 |
|  | 회계 · 세무 학과 | 63 | 63 | 65 | 65 | 65 | 65 | 65 | 65 |
|  | 빅데이터 응용 학과 | 29 | 29 | 30 | 30 | 1 | - | - | 1 |
|  | 소 계 | 280 | 280 | 316 | 316 | 286 | 286 | 286 | 286 |
| 호텔관광대학 | Hospitality 경영학부 ( 호텔 경영 학과 ) ( 컨벤션 경영학과 ) ( 외식 경영 학과 ) (조리 . 서비스경영학과 ) | - | - | - | 148 | 148 | 148 | 148 | 148 |
|  | Hospitality 경영학과 | 94 | 94 | 111 | - | - | - | - | - |
|  | 조리& 푸드디자인학과 | 35 | 35 | 37 | - | - | - | - | - |
|  | 관 광 ( 관광 학과 ) 학 부 (문화관광콘텐츠 학과) | - | - | - | 73 | 73 | 73 | 73 | 73 |
|  | 관광 · 엔터테인먼트학부 ( 관광 학과 ) (문화엔터테인먼트학과) | 66 | 66 | 73 | - | - | - | - | - |
|  | 글로벌 Hospitality·관광학과 | 20 | 20 | - | - | - | - | - | - |
|  | 문화 관광 산업 학과 \* | 1 | 1 | 1 | 1 | 1 | 1 | 1 | 1 |
|  | 조리 산업 학과 \* | 1 | 1 | 1 | 1 | 1 | 1 | 1 | 1 |
|  | 소 계 | 217 | 217 | 223 | 223 | 223 | 223 | 223 | 223 |
| 생활과학대학 | 아동 가족 학과 | 31 | 31 | 32 | 32 | 32 | 32 | 32 | 32 |
|  | 주거 환경 학과 | 31 | 31 | 32 | 32 | 32 | 32 | 32 | 32 |
|  | 의 상 학 과 20 10 | 36 | 36 | 37 | 37 | 37 | 37 | 37 | 37 |
|  | 식품 영양 학과 \* | 37 | 37 | 37 | 37 | 37 | 37 | 37 | 37 |
|  | 소 계 | 135 | 135 | 138 | 138 | 138 | 138 | 138 | 138 |
| 이과대학 | 수 학 과 | 46 | 46 | 46 | 46 | 46 | 46 | 46 | 46 |
|  | 물 리 학 과 | 46 | 46 | 46 | 46 | 46 | 46 | 46 | 46 |
|  | 화 과 | 46 | 46 | 46 | 46 | 46 | 46 | 46 | 46 |
|  | 생 물 학과 | 55 | 55 | 55 | 55 | 55 | 55 | 55 | 55 |
|  | 지 리 학 | 55 | 55 | 55 | 55 | 55 | 55 | 55 | 55 |
|  | 정보 디스플레이 학과 | 55 | 55 | 55 | 55 | 55 | 55 | 55 | 55 |
|  | 소 계 | 303 | 303 | 303 | 303 | 303 | 303 | 303 | 303 |

# [별표3] 2017~2024학년도 졸업필요학점

단과대학(학과), 입학년도별 졸업필요학점

|  |  | **2024** | **2023** | **2022** | **2021** | **2020** | **2019** | **2018** | **2017** |
| --- | --- | --- | --- | --- | --- | --- | --- | --- | --- |
| 문과대학 |  | 120 | 130 | 130 | 130 | 130 | 130 | 130 | 130 |
| 정경대학 |  | 120 | 120 | 120 | 120 | 120 | 120 | 120 | 130 |
| 경영대학 |  | 120 | 120 | 120 | 120 | 120 | 120 | 120 | 130 |
| 호텔관광대학 | Hospitality 경영학부 | 120 | 120 | 120 | 120 | 120 | 120 | 120 | 130 |
|  | Hospitality경영학과 | 120 | 120 | - | - | - | - | - | - |
|  | 조리&푸드디자인학과 | 120 | 120 | - | - | - | - | - | - |
|  | 관광학부 | 120 | 120 | 120 | 120 | 120 | 120 | 120 | 120 |
|  | 관광· 엔터테인먼트학부 | 120 | 120 | - | - | - | - | - | - |
|  | 글로벌Hospitality-관광학과 | 120 | - | - | - | - | - | - | - |
|  | 문화관광산업학과 | 120 | 120 | 120 | 120 | 120 | 120 | 120 | 120 |
|  | 조리산업학과 | 120 | 120 | 120 | 120 | 120 | 120 | 120 | 120 |
| 이과대학 |  | 130 | 130 | 130 | 130 | 130 | 130 | 130 | 130 |
| 생활과학대학 | 아동가족학과 | 120 | 130 | 130 | 130 | 130 | 130 | 130 | 130 |
|  | 주거환경학과 | 120 | 130 | 130 | 130 | 130 | 130 | 130 | 130 |
|  | 의상학과 | 120 | 130 | 130 | 130 | 130 | 130 | 130 | 130 |
|  | 식품영양학과 | 130 | 130 | 130 | 130 | 130 | 130 | 130 | 130 |
| 의과대학 | 의예과 | 81(수료) | 80(수료) | 80(수료) | 80(수료) | 80(수료) | 80(수료) | 80(수료) | 74(수료) |
|  | 의학과 | 181 | 181 | 181 | 181 | 181 | 182 | 183 | 183 |
| 한의과대학 | 한의예과 | 76(수료) | 76(수료) | 76(수료) | 76(수료) | 76(수료) | 76(수료) | 76(수료) | 75(수료) |
|  | 한의학과 | 168 | 168 | 168 | 168 | 168 | 169 | 169 | 169 |
|  | 약과학과 | 130 | 130 | 130 | 130 | 130 | 130 | 130 | 130 |
| 간호과학대학 | 간호학과 | 130 | 131 | 131 | 131 | 131 | 131 | 131 | 131 |
|  | 간호학과(야) | 120 | 120 | 120 | 120 | 120 | 120 | 120 | 120 |
| 음악대학 |  | 120 | 120 | 120 | 120 | 120 | 120 | 120 | 130 |
| 미술대학 |  | 120 | 120 | 120 | 120 | 120 | 120 | 120 | 120 |
| 무용학부 |  | 120 | 120 | 120 | 120 | 120 | 120 | 120 | 130 |
| 자율전공학부 |  | 120 | 120 | 120 | 120 | 120 | 130 | 130 | 130 |
| 공과대학 | 건축학과 외 | 130 | 130 | 130 | 130 | 130 | 130 | 130 | 130 |
|  | 건축학과 | 165 | 165 | 165 | 165 | 165 | 165 | 165 | 165 |
| 전자정보대학 |  | 130 | 130 | 130 | 130 | 130 | 130 | 130 | 130 |
|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 컴퓨터공학과 | - | - | - | 140 | 140 | 140 | 140 | - |
|  | 컴퓨터공학부 컴퓨터공학과 | 140 | 140 | 140 | - | - | - | - | - |
|  | 컴퓨터공학부 인공지능학과 | 130 | 130 | 130 | - | - | - | - | - |
|  |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 130 | 130 | 130 | 130 | 130 | 130 | 130 | - |
| 응용과학대학 |  | 130 | 130 | 130 | 130 | 130 | 130 | 130 | 130 |
| 생명과학대학 |  | 130 | 130 | 130 | 130 | 130 | 130 | 130 | 130 |
| 국제대학 |  | 120 | 120 | 120 | 120 | 120 | 120 | 120 | 120 |